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치매관리법」 개정(법률 제19306호, 2023. 3. 28. 공포, 2023. 9. 29. 시행)에 따라 치매관리시행계획의 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 규정을 하위법령에 마련하고, 자료제공 협조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치매관리 시행계획 평가의 세부절차 규정(안 제3조)

-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평가를 위해 평가지침을 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도록 함
-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도록 함

나. 치매안심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제공 협조의 범위 확대(안 별표1)

- 1) 치매안심센터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리에 필요한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근거 마련
- 2)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료,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협조 요청하는 근거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행될 해”를 “시행연도”로, “통보해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립·시행 및 평가를”을 “수립·시행을”로, “시행 계획 수립지침과 평가지침”을 “시행계획 수립지침”으로 한다.

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 시행결과(이하 “시행결과”라 한다)의 평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평가지침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제5항(중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결과를 매 시행연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 시행연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1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호를 제16호로 하며, 제14호,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에 관한 자료
1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료
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에 관한 자료

부 칙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통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치매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u>시행될 해</u> 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u>통보</u> 해야 한다.	제3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통보 등) ① ----- ----- ----- ----- <u>시행연도</u> ----- ----- ----- ----- ----- ----- <u>통보</u>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치매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 <u>시행계획</u> ”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u>수립·시행 및 평가를</u>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u>시행계획 수립지침과 평가지침</u> 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u>통보</u> 하여야 한다.	② ----- ----- ----- ----- <u>수립·시행을</u> ----- ----- <u>시행계획 수립지침</u>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시행 계획 시행결과(이하 “<u>시행결과</u>”라 한다)의 평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평가지침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평가지침에 따라 지난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결과를 매 시행연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 시행연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연 락 처	(044) 202 - 3533